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0,690,891	8,120,727
일반회계	253,074,564	7,592,237
특별회계	17,616,327	528,490
기타특별회계	17,616,327	528,4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8,181	23,045
주택사업특별회계	361,406	10,84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2,100	5,4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53,052	58,59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1,880	5,456
주차장특별회계	335,900	10,077
수질개선특별회계	13,333,808	400,01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00	6,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63,94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